

부산지방법원 2022. 6. 3 선고 2020나53873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

##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2. 6. 3 선고 2020나53873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7. 2 선고 2017가단2955 판결

## 전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원

담당변호사 윤장원, 박영신, 김덕우

피고, 피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화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명호인

변론종결 2022. 4. 8.

판결선고 2022. 6. 3.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7. 2. 선고 2017가단2955 판결

##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 사이에 별지 (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2. 체결한 증여계약 및 별지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12. 체결한 증여계약(위 각 증여계약을 이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각 취소한다. 피고 C은 피고 B에게, 별지 (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13. 10. 25. 접수 제135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14. 5. 19. 접수 제65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B은 원고에게 611,824,327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해서는 2018. 11. 15.부터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20,000,000원에 대해서는 2018. 11. 15.부터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이 유

####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와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서의 주장과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면 마지막 행 및 제4면 제1 내지 8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문서의 일부가 미완성인 상태로 서명날인을 하여 교부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므로 그 문서의 교부 당시 백지상태인 공란 부분이 있었고 그것이 사후에 보충되었다는 점은 작성명의인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단 문서의 내용 중 일부가 사후 보충되었다는 사실이 증명이 된 다음에는 그 백지부분이 정당하게 위임받은 권한에 의하여 보충되었다는 사실은 그 백지부분의 기재에 따른 효과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다100923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22호증의 5, 제23호증의 2, 을 제3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이 이 사건 제2, 3 대여 당시 원고에게 교부해 준 각 차용금증서에는 부동문자로 ”이자는 월 %로 정하고(이하 ‘이율란’이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이율란은 공란이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각 차용금증서가 작성된 이후 원고가 단독으로 이율란에 ‘2’라고 보충하여 기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당초 백지상태였던 위 공란 부분을 정당하게 위임받은 권한에 의하여 보충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에게 각 차용금증서의 이율란에 대한 보충 권한을 수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9, 4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피고 B로부터 보충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각 차용금증서의 이율란을 임의로 보충한 것으로 보인다.

①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제2, 3 대여 당시 피고 B과 사이에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각 차용금증서 이율란을 보충할 권한까지 위임받았다면, 채권자인 원고로서는 각 차용금증서 작성 당시 이율란을 보충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차용금증서 작성 당시에는 이율란을 공란으로 두었다가 그로부터 수년의 시간이 경과한 후 이를 보충하였다는 것은 거래관념상 상당히 이례적이다.

② 원고는 그 보충 경위에 대하여, “피고 B을 사기로 고소할 당시에도 이율란이 공란인 차용금증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이후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으며 차용금증서를 보다가 이율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피고 B이 2015년 내지 2016년경 D을 통해 이자를

감해달라는 부탁을 하였던 것이 기억나 2017. 2.경 각 차용금증서의 이율란에 '2'를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위 주장에 따르더라도 차용금증서 작성 후 약 3, 4년이 지나서야 갑자기 이율란을 보충할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인다.

③ 이 사건 각 차용금증서 작성 당시 피고 B이 원고에게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위임장에는 '채무자', '채무액', '대출일자'란에 대한 기재만 있을 뿐, 이율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나아가 구체적 위임사항으로 '채무금에 대하여 변제를 지체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조항을 넣는 일, 연대보증을 수락하는 일, 공정증서의 정본 및 등본을 수령하는 일, 기타 이에 부대되는 일체의 권한'이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고(이는 부동문자로 미리 인쇄되어 있었다), 달리 이자율에 대한 보충권을 위임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도 없다. 따라서 위 각 위임장이 작성·교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제2, 3 대여금에 대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권한을 넘어서 각 대여금에 대한 이율을 보충할 권한까지 수여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④ 피고들은 제1심에서부터 이 사건 제2, 3 대여금에 대하여는 이자 약정이 없었고, 갑 제22호증의 5, 제23호증의 2 각 차용금증서에 기재된 이율은 원고가 임의로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1) 그런데 원고는 이에 대하여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아니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2021. 1. 8.자 항소이유서를 통하여, 당초 각 차용금증서 작성 당시 이율란은 공란이었으나 사후에 임의로 이를 보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 B로부터 이율란에 대한 보충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원고의 변론 태도 및 주장 내용,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자신에게 불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실관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아니하다가 제1심이 '각 차용금증서의 이율란은 공란이었는데 원고가 이를 변조하였다.'고 설시하자 비로소 피고 B로부터 보충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차용금증서의 이율란을 보충한 시기는 이 사건 소 제기 직전인 2017. 2.경인 점을 더하여 보면, 각 차용금증서 작성 당시 이미 피고 B로부터 이율란을 보충할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6행 다음에 아래『』부분을 추가한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 및 당심 증인 D의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들, 즉 ① 피고 B은 D, J, K 등과 함께 부산 부산진구 L에 위치한 ‘M’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해 온 점, ② E은 2011.경부터 2014.경까지 위 M 주점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E 명의 G 및 H 계좌를 통하여 하루에도 수차례씩 수백, 수천만 원의 입·출금 거래가 이루어진 점, ③ E 명의 계좌를 통한 거래의 상대방은 원고, J, K, D, D의 동생 F, 피고 B의 배우자인 C, 위 주점의 임대인인 주식회사 N 등으로 위 주점 운영과 관련된 사람들로 보이는 점, ④ D은 당심에서 F 명의 H 계좌는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는 동안 본인이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F, E이 원고와 개인적인 금전거래를 함에 있어 그 명의 계좌를 사용하였다기보다는 피고 B이 위 주점을 운영하면서 이를 사업용 계좌로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및 항소심 판결문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형사사건 항소심이 계속 중이던 2017. 8. 4. 원고에게 5,000만 원을 공탁하거나 D을 통해 연 30%의 이자를 지급한 사실만 설시되어 있고, 그 외의 변제 내역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시가 없으므로 이와 내용을 달리하는 피고 B의 변제 항변은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8, 4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각 대여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 위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는 피고 B이 원고에게 형사공탁금 5,000만 원 및 연 30%에 상당하는 이자를 지급하여 왔음을 인정하는 외에 피해 회복이나 변제 내역에 관하여는 별다른 설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3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B은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비록 D을 통하여 변제하였다는 취지이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대여금의 원금과 이자 상당액이 변제되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관련 형사사건은 피고 B이 원고를 기망하여 대여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 여부가 주된 쟁점이라 할 것이고, 편취행위 후의 변제 내역은 양형요소로서 부수적 내용에 불과한 점, ③ 따라서 위 형사재판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복잡하게

이루어진 원고와 D, 피고 B 사이의 금전거래 관계 및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변제 내역에 대해서까지 면밀히 심리·판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 설시되지 아니한 변제 내역이 이 사건에서 피고의 변제 항변을 배척할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볼 수는 없고, 반대로 위와 같은 사정이 피고 B의 변제 항변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 제1심판결문 첨부 별지2 ‘A으로부터 차용 및 변제한 내역’ 중 2013. 10. 11.자 21,000,000원 및 2013. 11. 28.자 15,700,000원의 각 ‘입금의뢰인’란에 ‘B’를 추가한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태식, 판사 황지현, 판사 박승휘

별지

1) 피고들 제출 2019. 1. 7.자 준비서면, 2019. 5. 8.자 준비서면 각 참조